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60

발의연월일: 2021. 8. 2.

발 의 자:배진교・양정숙・장혜영

강은미 • 허종식 • 류호정

용혜인 • 이은주 • 심상정

김홍걸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4대 가상자산취급업소를 기준으로 해당 취급업소의 가입자는 총 581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가상자산이용자들이 해킹사고나 투자사기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과 먹튀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책을 발표하고 있고, 국내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실체가 없는 투기로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되,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그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함(안 제2조제23호 신설).
- 나. 가상자산사업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교환·보관·관리, 중개· 알선·대행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24호 신설).
- 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안 제2조제25호 및 제26호 신설).
- 라. 가상자산사업의 인가 요건, 인가 신청 및 변경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 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5부터 제46조의7까지 신설).

- 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는 접속자, 서버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웹사이트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매·중개를 금지함(안 제46조의9 신설).
- 사.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예 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8, 제46조의9, 제46조의10 및 제46조의11 신설).
- 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고지,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안 제46조의12부터 제46조의19까지 신설).
- 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알선·중개행위 금지, 자체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임원 등의 매매 거래 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46조의20부 터 제46조의25까지 신설).
- 차.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 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6 신설).
- 카.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반 의무 사항을 위반한 자, 가상자산거래와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한편, 현행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

하도록 현실화함(안 제49조 및 제51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4. "가상자산사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
 - 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5.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6. "가상자산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자금융업무 또는 가상자산사업 및"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각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한다.

제5장의2(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가상자산사업의 인가 및 업무

- 제46조의3(가상자산사업의 인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이를 영위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2.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 산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및 그 밖의 물적 설 비를 갖출 것
 -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것
 -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6.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7. 가상자산사업자와 자상자산이용자 간, 특정 가상자산이용자와 다른 가상자산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 링크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8.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 와 가상자산이용자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 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할 것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영 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6조의4에 따라 금융 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6조의4(가상자산사업의 인가신청) ① 제46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가상자산사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

- 할 수 있고, 흠결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 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의5(인가요건의 유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4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6조의6(인가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2. 인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 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6조의7(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 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8(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 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 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사고 등 가산자산사업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와 계약 조건 등을 포함한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의9(지하웹 거래 금지) 누구든지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자, 서버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10(가상자산예치금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 탁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예치금이 가상자산이용자의 재산이라 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사실과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 자산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 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자산예치금을 우선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 및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예치금 관리, 그 밖에 가상자산예치금의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동일종 목과 동일수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⑧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예치한 가상자산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 제46조의11(가상자산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6 조의10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 증계약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46조의10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의12(신의성실의무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상자산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13(명의대여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14(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이용자 간, 특정 가상자산이용자와 다른 가상자산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제46조의2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46조의2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15(가상자산사업자의 고지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가상자산을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자산의 명칭과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자산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작성한 가상자산 발행의 아이디어, 기술, 방법론 및 관련 시장현황과 전망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발간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공시하며, 그 이행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6조의16(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

한 사고

-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46조의17(손해배상책임)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46조의15 또는 제46조의16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의18(거래방식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19(실명확인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 제46조의20(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 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 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나.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점을 알면 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그 정보가 지정 가상자산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을 것
 - 나. 그 정보가 가상자산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 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 제46조의21(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 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모 의 한 후 매도하는 행위
 -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 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모

- 의 한 후 매수하는 행위
- 3. 그 가상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 등을 하는 행위
- 4.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가상자산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 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 3. 그 가상자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 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제46조의22(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23(계좌의 알선·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24(자체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의25(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제한) 가산자산사업자의 임원 및 직원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가상자산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 제46조의26(내부통제기준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 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7(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사업의 인가 및 가상자산거 래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4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를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6호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6호중 "동항"을 "같은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1. 제46조의20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 2. 제46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46조의21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46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46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 ③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6. 제46조의7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사업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 7.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3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 8. 제46조의9를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한 자
- 9. 제46조의10을 위반하여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 10. 제46조의18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 한 자
- 11. 제46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를 권유하면서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11. 제46조의13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가상 자산사업을 영위하게 한 자
- 7. 제46조의24를 위반하여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교환을 중개·알선 한 자
- 8.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46조의25를 위반하여 본인의 가상자산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한 임원 또는 직원 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으로, "제4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9조제3항"을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2. 제4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작성하여 공시한 자
- 3. 제4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4. 제4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5. 제46조의15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한 자
- 6. 제46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자는 이 법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가 제46조의15 또는 제46조의16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기 건 OL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
	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u>
	제외한다.
	<u>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u>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
	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
	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
	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 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 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

 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전자어음
- <u>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u> 전자선하증권
- <u>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u> <u>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u> 는 것
- 24. "가상자산사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u>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u> 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

<신 설>

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 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 수여부를 감독한다.

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 리하는 행위 마.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25.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 산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 를 말한다. 26. "가상자산이용자"란 가상자 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 을 매매, 교환 또는 보관 • 관 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회사, 전 자금융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u>금융회사</u>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 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u>금융</u> 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 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②		
업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③		
전자금융업자 또는 가상자산사		
업자의 전자금융업무 또는 가상		
<u> 자산사업 및</u>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u>가상자산사업자에</u>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자금융업자 또는 가상자산사업		
<u> 자</u>		
금융회사, <u>전</u>		
자금융업자 또는 가상자산사업		
자		
<u></u>		
<u></u>		

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제5장의2 가상자산사업의 인가 및 업무

제46조의3(가상자산사업의 인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 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2.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기

- 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을 것
-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것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갖출 것
- 6.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이하 "임원"이라 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7.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용자 간, 특정 가상자산이 용자와 다른 가상자산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8.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 산사업자의 계좌와 가상자산 이용자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 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 대를 할 것

-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가상자산사업 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및 제46조의4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 가를 받아야 한다.
- 제46조의4(가상자산사업의 인가 신청) ① 제46조의3에 따라 인 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가상자산사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에 흠결이 있 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흠결의 보완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 산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 가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인가요건의 유지) 가상
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인
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4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6(인가의 취소) ① 금융 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1.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2. 인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경우
-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 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 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의7(무인가 영업행위의 금 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가 상자산사업인가(변경인가를 포 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

<신 설>

<u>자산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u> 된다.

제46조의8(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 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 서류를 1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사고 등 가산자산사업자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상사업자는 제1항에

<신 설>

따른 업무보고서 외에 매월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와 계약 조건 등을 포함한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상황 공시, 제4항에 따른 보고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9(지하웹 거래 금지) 누 구든지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 야만 접속할 수 있으며 일반적 인 방법으로는 접속자, 서버 등 거래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 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가상자 산을 매매・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0(가상자산예치금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예치금(가상자산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가 상자산예치금이 가상자산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 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 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 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 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 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예치기관 또는 신탁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여 가상자

산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과 가상자산예치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가상자산예 지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들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받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 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야 하는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기관 및 신탁업자의 가상자산예치금 관리, 그 밖에

<u><신</u> 설>

<u>가상자산예치금의 예치에 필요</u>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동일종목과 동일수량을 보유하 여야 한다.
- ⑧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1 00분의 70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예치한 가상자산을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는 장치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46조의11(가상자산이용자 피해 보상계약) ① 가상자산사업자 는 제46조의10에 따른 예치 또 는 신탁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상자산이용자 피해보상계약(이 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 약
- 2.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보상

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 액이 제46조의10에 따라 예치 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 한 사유 없이 가상자산이용자

<신 설>

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3(명의대여의 금지) 가 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가상자산사 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4(이해상충의 관리)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
업자와 가상자산이용자 간, 특
정 가상자산이용자와 다른 가
상자산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
고, 제46조의26에 따른 내부통
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
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

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46조의2 6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 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 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 를 하여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5(가상자산사업자의 고 지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가상자산을 이 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 상자산의 매매 권유를 하는 경 우에는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 니라는 사실과 가상자산의 명 청과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 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자산 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가상 자산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작성한 가상자산 발행의 아이디어, 기술, 방법론 및 관련 시장현황과 전망 등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공 시하며, 그 이행 여부를 금융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16(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산자산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1.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 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46조의17(손해배상책임) 가상자

<신 설>

산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46조의15 또는 제46조의16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18(거래방식의 제한) 가 상자산사업자는 「방문판매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 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이와 유 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19(실명확인 등) ① 가상 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이용 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 해서는 가상자산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 제46조의20(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 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 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나.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점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전득(轉得)한 자
 -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그 정보가 지정 가상자산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가상자산이용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
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
개되기 전일 것

제46조의21(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에 관하여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 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모의 한 후 매도하 는 행위
-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모의 한 후 매수하는 행위
- 3. 그 가상자산을 거래함에 있

 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

 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
 등을
 하는
 행위

- 4.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 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가상자산거래 또는 그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

<u>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u> 는 행위

- 3. 그 가상자산거래를 함에 있

 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

 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제46조의22(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와 관 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 교를 사용하는 행위
 -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 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 나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모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 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 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3(계좌의 알선·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역을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4(자체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의25(임원 등의 매매거래의 시설 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원 및 직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가상자산 매매거래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26(내부통제기준 등) 가

제49조(벌칙) ① (생 략) <신 설> 상자산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 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 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6조의27(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사업의 인가 및 가상
자산거래에서의 이용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
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
을 적용하는 것이 가상자산이
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의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 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1. 제46조의20을 위반하여 가상 자산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 요정보를 가상자산거래에 이 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 2. 제46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46조의21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를 유인할 목적 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46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 5. (생 략)
-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46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 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 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 ③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2 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 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u>4</u>	 -

<u>7천만원</u>

- 1. ~ 5. (현행과 같음)
- 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조부터 제217조까지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u><신 설></u>

<u><신 설></u>

<신 설>

,
<u>⑥</u>
<u>5천만원</u>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46조의7을 위반하여 가상 자산사업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 7.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으로 제46조의3에 따른 가상
 자산사업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 8. 제46조의9를 위반하여 가상 자산을 매매·중개한 자
- 9. 제46조의10을 위반하여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자
- 10. 제46조의18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또는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매매·중개한 자
- 11. 제46조의15제1항을 위반하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10. (생 략) <u><신 설></u>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 략)
-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u>동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자

- ①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 호와 <u>제2항</u>제1호·제2호 및 제 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⑧ 제1항부터 <u>제7항</u>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반하여 본인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한 임원				
또는 직원				
<u> </u>				
<u>제4항</u>				
,				
⑩제9항				
제50조(양벌규정) 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				
<u>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u> 지 및 제5항				
<u>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u> <u>지 및 제5항</u>				
<u>지 및 제5항</u>				
<u>지 및 제5항</u> <u>제</u> 6항부터 제				
<u>지 및 제5항</u>				
<u>지 및 제5항</u> <u>제</u> 6항부터 제				
<u>지 및 제5항</u> <u>제</u> 6항부터 제				
<u>지 및 제5항</u> <u>제</u> 6항부터 제				
<u>지 및 제5항</u> <u>제</u> 6항부터 제				
<u>지 및 제5항</u> <u>제</u> 6항부터 제				
<u>지 및 제5항</u> <u>제</u> 6항부터 제				
<u>지 및 제5항</u> <u>제</u> 6항부터 제				

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3 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 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 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51조(과태료) <u><신 설></u>

②
제49조제5
<u> </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u>과한다.</u>
1. 제4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
<u>출한 자</u>
2. 제4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공시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시한 자

- 3. 제4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 4. 제46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u>자</u>
- 5. 제46조의15제4항을 위반하여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보고한 자
- 6. 제46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 니한 자
- <u>②</u> ~ <u>④</u>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

<u>(5)</u>	<u>제</u> 4	<u>ॅ</u> ठे